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70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 박지혜・김성환・조인철

이건대 · 위성곤 · 황명선

이재강 · 허성무 · 이소영

허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, 주차장,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7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 존속기한
219	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	원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 2030. 12. 31.
	특별법」 제14조의2	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